

2007년도 인문학진흥  
인문한국지원 사업 신청요강  
(Humanities Korea Project)

2007. 6.

한국학술진흥재단

# 차 례

<b>사업 총괄 개요</b>	<b>1</b>
I. 사업개요	1
II. 지원분야	2
III. 사업내용	2
<b>인문분야</b>	<b>4</b>
I. 지원대상	4
II. 사업계획	13
III. 신청	15
IV. 심사 및 선정	19
V. 평가 및 관리	23
<b>해외지역연구분야</b>	<b>26</b>
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26
II. 지원영역 및 분야	27
III. 지원대상	27
IV. 연구소 사업계획	28
V. 심사 및 선정	28
<b>기타 행정 사항</b>	<b>31</b>
붙임 사업비 산정집행기준	32

# 사업 총괄 개요

## I.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연구소/단' 중심의 연구 체제를 확립하여 연구소 내에 연구주체세력을 양성함으로써 인문학 연구의 인프라 구축과 국제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구축함
- 연구소/단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연구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 성과의 학문적·사회적 확산을 지향하여 세계적 담론 생산과 소통을 주도하고 지식 기반 고부가가치를 창출
- 학문적·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기획된 학제적 통섭 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원, 세계화·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고, 당면 문제의 진단과 해결 방안을 도출하며, 미래의 전망을 모색함

### 2. 지원방향

- 인문학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개별 단위 지원이 아닌 대학연구소 단위로 지원하고, 연구소 소속 전임연구교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함
- 장기 기획 연구가 필요한 아젠다를 설정하여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사업 운영
-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국제적 학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교 우위에 있는 연구소/단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함
- '보호와 육성' 원칙 하에,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연구력 보존을 위해 자료 토대 구축 및 지역 전문가 양성을 지원함
-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연구의 자율성과 인사 및 사업비 운영 등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성과 및 연구소 운영 현황을 공시하여 연구소의 책임성을 강화함
- '지식의 선순환적 재생산 구조 구축' 원칙 하에, 연구 성과의 학문적·사회적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성과물의 DB 구축 및 서비스 체계 운영을 지원함

## II. 지원 분야

### 1. 인문연구 분야

- 사회적, 학문적으로 장기 기획 연구가 필요한 아젠다 및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인문학적 질문과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연구
  - ※ 인문학을 중심으로 타학문분야와의 학제적 아젠다 개발 권장
  - ※ '인문학진흥 기본계획'에 기술된 사업배경 및 목적 참고
- 아젠다의 예시 : '사회의 인문적 기초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 연구', '인간교육과 인문적 가치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 발전과 윤리', '한국 사상, 역사, 문화에 관한 연구' 등

### 2. 해외지역연구 분야

- 세계 각 지역 및 국가 전반에 대한 연구

## III. 사업내용

### 1. 지원규모 및 기간

가. 지원예산 : 20,000백만원

#### 나. 지원규모

- 인문분야 대형연구소/단
    - 연간 10~15억원 규모로 '07년도 5~10개 내외 선정 예정
    - 세계적 우수연구소로의 성장 지향
  - 인문분야 중형연구소/단
    - 연간 5~8억원 규모로 '07년도 5~10개 내외 선정 예정
    - 인문학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대형 연구소 기반 역할
  - 해외지역 연구소
    - 연간 5~8억원 규모로 '07년도 5~10개 내외 선정 예정
    - 세계 각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의 기반
- ※ 단위지원 예산규모는 사업추진상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

용함

※ 신청내용이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이 남더라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유망연구소 제도 도입

- 인문분야 중형 연구소/단 및 해외지역 연구소의 신청과제 중 최종선정권은 아니더라도, 선정 연구소/단의 학문분야별 다양성 및 지역분포도, 대상 연구소/단의 창의성과 성장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음
- 1단계(3년)에 한하여 연간 1억원 지원

다. 지원기간 : 최장 10년까지(3년+3년+4년)

- 중간평가(연차 및 단계 평가, 수시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급 및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라.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비고
2007. 6.	- 사업안내	
8.	- 신청접수	
9~10.	- 요건/전공/면담/종합심사 및 선정	
11.	- 협약체결 및 지원비 송금	개시일: 11. 1

# 인문 분야

## I. 지원대상

### 1. 단위 : 연구소 및 연구단

※ 연구소내 일부 과제 지원이 아니라 연구소 전체에 대한 지원임

#### 가. 연구소 : 대학부설연구소

- 학칙에 의해 규정된 단일 연구 기관

#### 나. 연구단 : 대학내, 대학간의 부설연구소 및 연구단체 간 컨소시엄

- 연구소 운영 및 연구 실적이 우수한 중·소규모 연구소 및 연구단체의 협력체로서 '통합운영계획'(또는 통합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인문학 분야 대학부설 연구소가 주관이 되어야 하며, 주관연구소가 소속된 기관(대학교)이 인력임용 및 예산전환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져야 함
    - 참여기관 간의 역할 및 의무분담 내역(예산배분, 인력임용 및 정년보장 전환 계획 포함)을 포함하여 연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신청시 제출하고 선정후 이행하여야 함
  - 연구단체는 인력, 예산 등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함
- ※ 연구단 단위는 인문연구분야만 신청가능하고 해외지역연구분야는 신청 불가

## 다. 참여인력구성

구분		자격	최소요건	대형	중형
연구소장/단장		총괄책임자		1명	
연구원	일반 연구원	연구소/단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본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자	참여인력업적요건 에 해당하는 자	자율	
	HK <sup>1)</sup> 연구교수	연구소/단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본 사업비에서 전임강사 수준 이상 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 * 정년보장 전환 후보	박사학위소지자로 서 참여인력업적요 건에 해당하는 자	10명 이상	5명 이상
	HK 연구원	연구소/단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본 사업비에서 연구전임인력 수준 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	박사학위소지자		
연구보조원		석박사과정생 및 학부생		자율	
행정요원		교직원		2명 이상	1명 이상

- ① 인적 구성 원칙 : HK연구교수 및 HK연구원 구성시, 동일교 출신자는 50% 이내로 제한하며, 동일교 여부는 학위취득기관(대학교) 단위를 기준으로 함
- 선정후 임용 100% 완료시 기준 (1차년도 연차평가지 확인 점검)
  - 단, 동일교 출신일지라도 인문학이 아닌 타 학문분야(대분류 기준) 전공 학위취득자의 경우 타교로 간주

구분	기준
HK연구교수	동일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50% 이내로 제한 동일교 학사과정 졸업자는 50% 이내로 제한
HK연구원	동일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50% 이내로 제한

- ② 연구보조원은 연구소/단장 책임 하에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하며, 연구보조원 수는 자율이나, 본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보조원 활용 및 교육 방안에 대해서 평가할 예정임
- ③ 행정요원을 배치하여 사업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도록 함. 단, 정식교직원이어야 하며 연구원 및 보조원 활용은 인정하지 않음.

1) 인문한국(Humanities Korea)의 약칭, 이하 HK

## 라. 신청제한

- 본 인문한국지원사업(인문분야 및 해외지역분야) 내에서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신규설립 연구소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받고 해당 연구소 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소는 신청할 수 없음
- 재단 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서 현재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소의 경우, 기존 수행과제와의 연계·확대 계획(인력방안 포함)을 포함한 통합계획을 제시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 선정될 경우에는 인문한국지원사업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기존 중점 연구소 지원은 중단됨
  - ※ 기존 중점연구소 과제와 무관한 내용으로는 신청 불가함
  - ※ 재단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소는 신청할 수 없음

## 2. 참여인력

### 가. 공통사항

- 1) **업적 요건**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

- 2002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국제학술지(A&HCI, SSCI, SCI/SCIE 등) 게재논문, 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또는 전문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등의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이어야 함

- ※ 단독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
- ※ 단,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의 연구자로서, 상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실적을 대표업적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시 입력하여야 함



- ※ 관련분야의 대학 소속 이외의 전문가(연구소, 문화원, 박물관, 향교, 서원, 서당 등)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자격을 조정함
  -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이상의 전문가가 참여 가능하며, 연구업적에 상응하는 조사보고서 또는 활동실적도 인정할 수 있음
- ※ 정년퇴임 교원은 HK연구교수 및 HK연구원으로 신청할 수 없음
- ※ HK연구원의 경우 박사학위소지자여야 하며, 연구실적 3편 이상의 업적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됨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제 5 조 (지급대상) 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의 대학(대학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또는 그 소속교원
2.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연구자
3.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예술활동을 지원받는 과학자·예술가 또는 그 단체
4. 대학의 시간강사
5. 국내외의 대학 등의 기관에서 연수 중인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6. 학술연구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자

## 2) 신청 및 참여제한

- 본 인문한국지원사업(인문분야 및 해외지역분야) 내에서는 1인이 1연구소/단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는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선정 전후 재단으로부터 제재사항이 발생하는 연구원은,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인문한국연구소/단의 연구원으로서의 혜택(연구활동비 지급 등)을 받을 수 없음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기존에 1인 2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라도 2007년도 신규 인문한국연구소/단의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수행할 수 있음. 단, 기 수행과제 종료 후 신규과제 신청 시에는 1인 2과제(인문한국연구소/단 참여 포함) 원칙을 적용함
  -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재단 정책과제, 대학교육개발연구지원과제, 우수논문사후 지원과제, 우수학자지원과제, 박사논문출판 지원과제, 사전편찬 교육부 정책과제는 연구 참여제한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본 사업에 인건비수령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음. 단, 기존의 인건비 수령 과제의 연구기간만료일이 2007. 12. 31. 이전인 경우는 2007년도 인문한국연구소/단의 연구교수 및 연구원으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인문한국지원사업비에서 지원받아야 함
- 연구보조원은 1인 1과제에 한하여 재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타 학술연구조성사업 과제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는 인문한국연구소의 연구보조원으로 동시 참여할 수 없음(BK21 및 NURI사업 제외)

## 나. 연구소장/단장

- 총괄책임자로서 아젠다 설정, 연구소/단 기반 조성, 인력육성 및 연구소/단 운영을 관리해야 함
- 탁월한 연구경력 및 경영관리 능력을 지녀야 함

- 현재 소장이 아닌 사람도 신청 가능하되, 연구소/단이 선정되면 소장/단장으로 취임하여야 함
- 연구소/단 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본 사업비 중에서 사업운영비용(연구활동비 포함) 활용 가능
-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지원기간 10년)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불가피한 교체 사유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단계별지원기간(3년+3년+4년)은 책임져야 함**
- ※ 사업기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당 연구소장/단장 임기 관련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함(신청시 제출)

## 다. 일반연구원

- 본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연구원
- 연구소/단 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본 사업비 중에서 사업운영비용(연구활동비 포함) 활용 가능

## 라. HK연구원

### 1) 임용 및 근무 조건

- 선정후 대학의 임용절차에 따라 임명(반드시 대학총장의 채용 발령)하여 상근 하여야 하며, 연구소/단 업무에 전념하여야 함.
  - 단, 우수인력풀의 최대 활용을 위해, HK연구원과 HK연구교수를 합하여(연구교수와 연구원 간 인원수 제한은 없음) 2차 신청 당시 50% 이상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선정후 10개월 이내에 100% 임용 완료하여야 함(1년차 연차평가 시 확인)
  - 선정 당시 구성된 인력(50%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용 완료하여야 함
  - 선정후 기관별 추가 임용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규정에 따라 임용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시 외부심사자가 50% 이상 참여하여야 함
- 대우조건에 있어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 외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동

일 대우 직급의 교원에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하여야 함. (신청시 관련 규정 또는 개정안을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선정후 이행하여야 함)

- 강의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단장 책임 하에 주당 3시간 이내로 한정
- 대학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 (최소 1인당 1.5평 이상)

## 2) 보수 조건 : 재단 연구전임인력 수준 (연 2,700만원 이상)

- 기 지급 지원비 내에서 해당 연구소/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능력을 평가하여 1인당 기준액의 10%이내 추가 지급 가능

## 마. HK연구교수

### 1) 임용 및 근무 조건

- 선정후 대학의 임용절차에 따라 임명(반드시 대학총장의 채용 발령)하여 상근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소 업무에 전념하여야 함.
  - 단, 우수인력풀의 최대 활용을 위해, HK연구원과 HK연구교수를 합하여(연구교수와 연구원 간 인원수 제한은 없음) 2차 신청 당시 50% 이상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선정후 10개월 이내에 100% 임용 완료하여야 함(1년차 연차평가 시 확인)
  - 선정 당시 구성된 인력(50%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용 완료하여야 함
  - 선정후 기관별 추가 임용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규정에 따라 임용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시 외부심사자가 50% 이상 참여하여야 함
- 대우조건에 있어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 외에는 동일 직급의 전임교원에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 하여야 함.
  - HK 연구교수에 대해서 학과의 전임교원과 같은 발전 트랙('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정교수'에 준하는 승급 제도)을 제도화하는 규정 또는 규정 개정 계획을 신청시 제출하고 선정후 준수하여야 함

- 강의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단장 책임 하에 주당 3시간 이내로 한정
- 대학에서는 HK연구교수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최소한 1인당 1.5평 이상의 독립공간)

## 2) 보수 조건 : 국공립대 동일직급 전임 교원 보수의 90% 수준

- 사립대의 경우 본교와 국공립대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보수의 90% 수준으로 지급
- 기 지급 지원비 내에서 해당 연구소/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능력을 평가하여 1인당 기준액의 10%이내 추가 지급 가능

## 3) 정년보장교원 직위 확보 의무

- 사업종료 시점 기준, HK연구교수에 대한 일정수 이상의 정년보장직위 확보 및 직위 유지를 위한 예산 부담을 완료하여야 함.
  - 기준 : 간접비를 제외한 연간지원비 1.5억원당 1명의 정년보장 직위를 확보하여야 하며, 10년차 사업종료시점에서는 그 50% 이상이 완료되어야 함. 일정 등의 문제로 인해 기한내 정년보장 전환 완료가 안되더라도 직위 확보·유지 및 예산 부담은 해당 기관(대학교 단위)에서 책임져야 하며, 해당 예산을 타용도로 유용할 수 없음(단, HK연구원 및 HK연구교수 인건비로의 활용은 가능)
  - 선정당시 계획서 상에 단계적 전환 계획(예산확보 계획 포함)이 명시되어야 하며 그 실행여부 및 정도를 재단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연차/단계 평가시 반영 예정
- 신청시 채용계획과 함께 관련규정의 제·개정안을 제출하여 선정 이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은 선정후 정식 임용까지 변경하거나 개정하여서는 안됨
- 기관별 정년보장 채용 계획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전환하되, 최소한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임용 5년차 이전에 정년 보장직위로의 전환 심사를 개시하여야 함.

- 정년보장 전환 심사시 해당 기관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외부심사자가 50% 이상 참여하여야 함

#### 4) 미이행시 대학의 계약위반사례로서 제재조치 함

- 계약 미이행시 교수 1인당 1.5억원의 배상 내지 기지급받은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하며, 배상의 주체는 대학 재단(대학 총장, 사립대의 경우 재단 이사장)이 됨.
- 계약위반이 중대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기지급 사업비 전액 반환)
  - 신청시 HK연구교수 및 연구원의 임용 및 활용, 정년보장전환계획 및 예산에 관한 총장 협약서, 이사회 의결서(사립대의 경우) 제출

### 3. 대학의 기관(협력기관)의 사업 참여

#### 가. 협력기관의 조건

- 협력기관의 종류와 수에는 제한 없음
- 협력기관과의 연계활동을 기획하여 사업운영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
  - 공동강좌개설, 공동연구 시행,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

#### 나. 협력기관의 종류

협력기관	범위
지방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체부설연구소, 지자체출연연구소
NGO	『민법』 상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상 '공익법인'
언론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일간신문 발행 법인 『방송법』 및 『전파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법인
시도교육청	광역시도 교육청
기타 기관	박물관, 도서관, 문화원, 기타 연구단체 및 기관

## II. 사업계획

### 1. 사업계획 수립

- 연구아젠다 및 연구소/단 운영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
- 10년 장기계획 및 단계별(3년+3년+4년) 세부계획 수립
- 단계적 연구소/단 전임교원(정년보장) 확보 계획 수립
- ※ 계획 및 목표 수립시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

### 2. 아젠다 기획

- 각 연구소/단별로 사회적 수요, 학계동향 및 다수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한 연구 아젠다 기획
- 향후 30~40년의 사회적/학문적 장기 전망 하에 10년간 수행할 아젠다 기획
- 아젠다는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인문학적 질문과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기초토대연구 분야 가능
- ※ 연구 아젠다의 예시 : '사회의 인문적 기초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 연구', '인간교육과 인문적 가치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 발전과 윤리', '한국 사상, 역사, 문화에 관한 연구' 등
- ※ 아젠다 기획 시 '인문학진흥 기본계획'에 기술된 사업배경 및 목적 참고

### 3. 대학의 지원 계획

- HK연구인력 임용 및 정년보장교원 직위 확보 계획
- 연구소/단의 각종 학술 활동에 대한 지원 계획
-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특성화 계획)과 연계한 연구소/단에 대한 지원 계획
- 연구소/단 시설 및 공간 확보계획

#### 4. 연구소/단 운영계획

##### 가. 기본원칙

- 연구소장/단장 책임하의 자율 운영
- 연구소/단 운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
  - 운영의 제도화, 조직체계의 선진화
  - 연구단의 경우, 참여 연구소의 발전상 제시
- ※ 관련규정 및 지침 제출

##### 나. HK 연구교수/원 확보 : 연구교수/원의 확충 목표 및 실현 방안

- 임용 및 대우 관련 규정 제·개정(신청시 제출 및 이행 의무)
- 평가 체계 및 선정의 제도화

##### 다. 연구 활동

- ※ 연구원들의 자발적·창의적 연구를 보장할 수 있는 연구 목표 제시
  - 연구활동의 70%는 개인 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보장
- 해당분야의 선도적 연구 활동
  - 연구소 특성에 맞는 국제화·세계화 방안
  - 국제적 수준·전국규모 학술지 발간 등의 목표 제시
- 해당분야 연구의 인프라 구축
  - 해당 분야의 자료 및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대외적으로 제공
- 네트워킹 활동 : 유관기관과의 정기적 협의 및 학술대회 등 개최(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 연구성과 서비스 : 연구성과물의 상호 교류를 위한 학술활동 등 학문적·사회적 확대 재생산 도모 (※DB구축, 자료서비스, 시민강좌 등)

#### 5. 사업비 운영 계획

- 총액제한제 : 신청하고자 하는 총액 규모 내에서 아젠다 수행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하되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지원 항목	예산비중(%)	지원내용
인건비 - HK연구교수 - HK연구원 - 보조원	70% 이상	- HK 연구교수 인건비 - HK 연구원 인건비 - 보조원 인건비
사업운영 비용	30% 이내	- 연구활동비(단장/소장, 일반연구원) - 아젠다 수행 비용 - 네트워킹 비용

※ 신청항목 및 기준은 [붙임] 사업비 산정 집행 기준표 참고

### III.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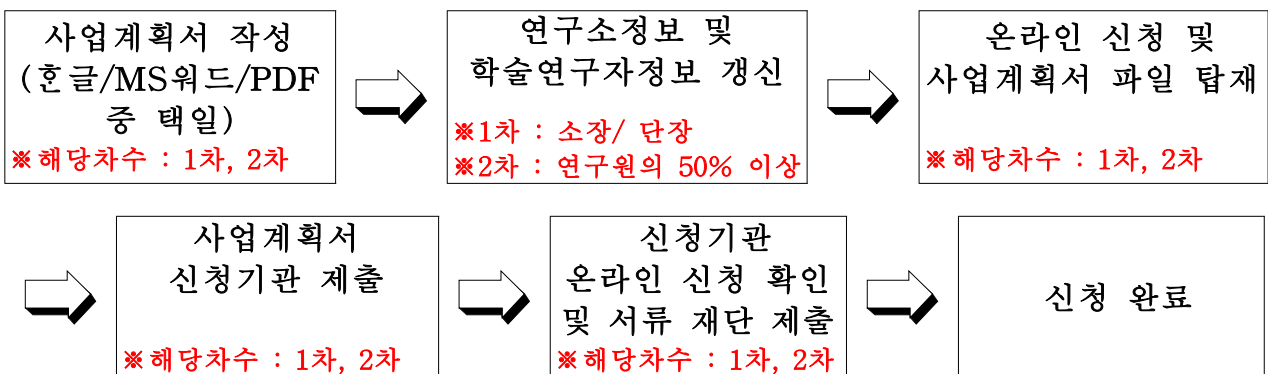
#### 1. 신청기간

가. 1차 신청 : 2007. 8. 21.(화) 14:00 ~ 8. 24.(금) 18:00 까지

나. 2차 신청 : 대상 기관 추후 개별 통보 (9월 예정)

※ 1차 예비심사 통과된 사업단에 한하여 2차 신청함

####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가. 1차 신청

##### 1) 온라인 신청 전

① 연구소 정보 입력 : 온라인 신청전 재단 「대학부설연구소정보」에 해당 연구소의 정보를 입력 또는 수정 하여야 함

※ 연구단의 경우, 참여 연구소 전체가 등록되고 정보가 갱신되어야 함

※ 신설 연구소일 경우, 기관등록 후 입력·수정하여야 함

- 재단 홈페이지 → 알림마당 → 통합자료실 → 메뉴바 오른쪽 끝 '통합자료' 클릭 → 제목 검색에서 '등록'으로 검색 → '기관등록 안내' 참조

- ② 소장/단장 정보 입력 : 재단 홈페이지 「학술연구자정보」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신청 후 추가 등록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취소하시고 다시 신청하여야 함)

※ 연구단으로 신청 할 경우, 참여하는 각 연구소의 소장 정보도 갱신

- ③ 온라인 신청시 사업계획 작성 파일을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한글」, 「MS워드」, 「PDF」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단 소정 양식으로 미리 작성 하여야함 (PDF 파일로 탑재하는 것을 권장 하며 용량은 10MB 이내)

## 2) 온라인 신청시

- ① 소장/단장은 1차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사항"을 입력하고, "사업 계획서" 파일을 작성하여 탑재하여야 함
- ② 소장/단장의 대표업적은 “**업적요건**”에 해당하는 연구실적 중 3편만 선택하여야 함. 단,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A&HCI급·SSCI급·SCI/SCIE급 등의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의 연구자로서, 상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실적을 대표업적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시 입력하여야 함
- ③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마감일 종료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④ 온라인 신청 및 사업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3) 온라인 신청 후

- ① 소장/단장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계획서 포함) 1부를 출력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 제출
- ②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소장/단장으로부터 신청 입력내용(사업계획서, 본인 대표업적 포함)을 접수하여 내용 확인 후 아래의 기한 내에 온라인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하고 서류를 재단에 제출해야 함. 온라인 신청 확인이 되지 않은 과제 및 서류 미접수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
  - 기관 확인 기간 : 2007. 8.27.(월) 14:00 ~ 8. 28.(화) 18:00
  - 재단 서류 접수 마감일 : 2007. 8. 30.(목) 18:00까지
    - ※ 제출서류 종류 및 부수는 추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이며, 신청접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해당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재단에 제출한 신청내역을 자체 보관하여야 함

### 나. 2차신청 : 1차 통과기관에 한함(9월 통보 예정)

#### 1) 온라인 신청 전

- ① 연구원 정보 입력 : 재단 홈페이지 「학술연구자정보」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신청 후 추가 등록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취소하시고 다시 신청하여야 함)
- ② 1차 심사결과를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2차 온라인 신청 전에 「한글」, 「MS워드」, 「PDF」 중 하나로 선택하여 재단 소정 양식으로 미리 작성 하여야함 (PDF 파일로 탑재하는 것을 권장하며 용량은 10MB 이내)

## 2) 온라인 신청 시

- ① 소장/단장은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사항"을 입력하고, "수정사업계획서" 파일을 작성하여 탑재하여야 함
- ② 참여 연구원의 명단을 확정 입력 완료하여야 함
  - 일반연구원 : 100%
  - HK 연구교수 및 연구원 : 예상인원의 50% 이상
  - 연구보조원 : 신청시 입력하지 않음 (선정 후 사후 보고)
- ③ 각 참여 연구원의 대표업적은 “**업적요건**”에 해당하는 연구실적 중 3편만 선택하여야 함. 단,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A&HCI급·SSCI급·SCI/SCIE급 등의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의 연구자로서,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실적을 대표업적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시 입력하여야 함. 단, HK 연구원은 대표업적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 ※ 단, 심사시에는 대표업적을 포함하여 연구원들의 개별 학술연구자정보에 기입된 연구실적 및 경력 일체를 반영함
- ④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 “**업적요건**”에 해당하는 연구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구자는 연구실적에 상응하는 조사보고서 또는 활동실적 및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신청시 입력하여야 함
- ⑤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마감일 종료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3) 온라인 신청 후

- ① 소장/단장 : 신청완료 후 입력내용(수정계획서 포함) 1부를 출력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 제출
- ②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소장/단장으로부터 신청 입력내용(사업계획서, 본인 대표업적 포함)을 접수하여 내용 확인 후 아래의 기한 내에 온라인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하고 서류를 재단에 제출해야 함. 온라인

신청 확인이 되지 않은 과제 및 서류 미접수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

○ 신청기관 온라인 신청 확인 기간 : 추후 통보

○ 재단 서류 접수 마감일 : 추후 통보

※ 제출서류 부수는 추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신청 접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해당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재단에 제출한 신청내역을 자체 보관하여야 함

## IV. 심사 및 선정

### 1. 심사절차

단계별	심사구분	심사내용
1단계	예비심사	- 연구 아젠다 및 시행계획 - 연구실적 및 연구소/단 운영실적 - 연구소/단 운영계획 * 면담 포함(발표 질의 및 응답)
2단계	전공심사	- 세부 시행계획(인력포함) - 연구소/단 운영계획 * 면담 포함(발표 질의 및 응답)
3단계	종합심사	- 1·2단계 심사내용 검토 - 예산배정 및 선정

※ 각 단계별 요건심사(신청요강에 의한 행정요건 저촉여부 검토 등) 실시

※ 1단계 심사 통과 연구소에 한하여 2단계 심사 실시함

※ 2단계에는 1단계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한 수정 계획서를 심사 함

※ 각 단계별 심사시 항목별로 실현가능성을 중점 검토할 예정

### 2. 심사방법 및 내용

#### 가. 예비심사

○ 심사내용 : 연구아젠다, 연구실적 및 연구소/단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항 목	심 사 내 용	배점
1. 연구 아젠다	- 상황분석, 문제의식 및 창의성 - 장기적 비전 및 구체성	40
2. 연구수행가능성	- 연구소/단(기관, 연구팀 포함) 운영 및 연구실적을 통해서 본 연구수행가능성 - 과제 운영의 객관적 능력 (공간 및 제도) - 향후 운영 계획 - 연구소장/단장의 능력	60
합 계		100

※ 면담심사 실시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심사, 일정 추후 통보)

※ 신생연구소의 경우 공간 확보 및 제도 수립 계획을 중심으로 검토하  
되, 전신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심사시 반영 예정

※ 1차 심사통과 연구소/단에 한하여 심사결과를 반영한 세부계획 수정  
제출 가능 (심사의 컨설팅 기능 강화)

나. 전공심사

○ 심사내용 : 세부연구계획, 연구소/단 운영계획(단, 중, 장기)

○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심 사항 목	심 사 내 용	배점
1. 아젠다 수행	내용	- 연구아젠다의 창의성/타당성 - 세부내용 및 세부내용간의 연계성 - 연구내용·방법의 적합성/논리성/구체성 -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25
	수행능력	- 참여인력의 역량 - 인적 구성의 적정성	15
2. 연구소 육성 및 운영	운영실적 및계획	- 기존 실적 - 연구원 및 연구교수 활용 계획 (정년보장 전환 계획 포함) - 연구보조원 교육 활용계획	20
	운영기반	- 연구소 시설, 공간 및 연구장비 지원 - 전문학술지 등 발간 여부 - 연구소 내 조직 및 의사결정 시스템 - 연구원 업적 평가 시스템	20
	기관의 육성의지	- 인력 임용 관련 의지 (규정, 제안 등) - 연구소 시설, 공간 및 연구장비 지원	20
합 계			100

- ※ 면담심사 실시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심사, 일정 추후 통보)
- ※ 신생연구소인 경우, 공간 확보 및 제도 수립 계획을 중심으로 검토
- ※ 대학구조개혁, 대학특성화, 대학입학정책 등 교육정책에 대한 추진실적(교육정책 유도 지표)을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음

#### 다. 종합심사

- 심사내용
  - 전공심사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검토
  - 선정기준(안) 및 예산배분
- 유망연구소 대상 선정

### 3. 선정 및 협약체결

#### 가. 선정

- 최종선정 대상 확정 및 발표는 교육인적자원부

#### 나. 협약체결

- 연구소/단별로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과 협약체결
- 연구소/단 소속 기관장, 연구소/단장이 연명 날인
  - ※ 연구단의 경우, 참여 연구소 소속 기관장 연명 필요여부 확인
- 주요협약 내용
  - 달성해야 하는 주요성과
  - 대학, 연구소/단의 주요의무 이행사항
  - 불이행시 조치사항
  - 지원비 및 지원기간
  - 사업계획서, 사업추진현황등에 대한 정보 공개
  - 기타주요 사항

#### 4. 사업비 지급 및 관리

가. 지급방법 :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나. 지급시기 : 지원 연구소 선정 후 연 단위로 지급

다. 사업비 사용 : 연구소 소속기관은 협약 체결 후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

라. 사업비 관리 : 사업비는 반드시 연구소장/단장이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이 중앙관리하여야 함.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

- 사업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사업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급 받은 때
- 연구진행상황보고 및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사업비 관리지침(사업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 마. 간접비

○ 지원대상 : 선정 연구소의 소속대학(교)장에게 지원

※ 연구단의 경우, 주관연구소 소속 기관에게 지원

○ 지원기준비율

- 원가계산에 의한 계상기준 적용대학(총 47개 대학): 20% + 연구비 인종제 인센티브(3%)
- 일괄기준에 의한 계상기준 적용대학 및 대학 외 연구기관(총 166개 대학 및 기관, 그 외 미평가 대학 및 기관)은 연구비중앙관리제에 의한 차등지급(2006년도 평가기준): A등급 15%, B등급 10%, C등급 5%, D등급 또는 미평가 : 3%

※ 연구단의 경우, 주관연구소 소속 기관의 비율 적용

○ 지원시기 : 지원결정 사업비 지원시 일괄 지급



## V. 평가 및 관리

### 1. 평가 중점 방향

#### 가. 당초 계획 대비 달성 여부 및 수준 평가

- 연구소/단 전체의 목표 달성도와 연구원 개인의 연구성과 측정

#### 나. 연구소/단별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

#### 다. 평가의 환류기능 강화

- 평가결과의 컨설팅 기능 강화
- 차등지원 및 계속지원여부 반영

※ 중간평가(연차평가, 단계평가, 수시점검)를 통해 하위권 연구소 지원비의 10% 이내를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상위권 연구소에 인센티브 지급

※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하거나 중간평가(연차평가 및 단계평가)결과 탈락된 연구소/단은 향후 2년간 본 사업에 신청을 제한함

### 2. 연차평가

#### 가. 연차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각 연도별 연구개시 후 10개월 이내
  - ※ 단계보고서 제출시에는 단계보고서로 대체함
- 제출자료
  - 연구계획 대비 연구진행 상황
  - 사업계획서의 이행 상황
  - 인력임용 경과 및 현황
- 제출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 나. 연차평가 내용 및 방법

- 평가 시기 : 연차(단계)보고서 접수 후 차년도 연구개시 전
- 평가 방법 : 전년도 계획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계획 평가를 중심으로 실시
  - ※ 특히, 1차년도에는 인력 구성 현황에 대한 평가 엄정 실시

#### 다. 평가 결과 조치 : 계속지원 여부 및 지원비 결정

- 연차평가는 컨설팅 개념으로 접근
- 패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 3. 단계평가

#### 가. 단계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전 3개월 이내
- 제출자료
  - 현 단계 결과보고서
  - 다음 단계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인력운용 현황 보고서
- 제출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 나. 단계평가 내용 및 방법

- 제1단계 전공평가 : 전단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평가
- 제2단계 면담평가
  - 대상 : 전공평가지 면담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연구소
  - 내용 : 1단계 평가 내용에 대한 확인(전공평가결과 최종 확정)
- 제3단계 종합평가 : 서면평가 및 면담평가 결과 검토

#### 다. 평가 결과 조치 : 계속지원 여부 및 지원비 결정

### 4. 수시점검

- 단계평가지 및 필요시 현장점검 및 실사를 실시하여 결과 반영

### 5. 총괄평가

#### 가. 총괄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지원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제출자료 : 사업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서  
(향후 발전(운영)계획 포함)

**나. 총괄평가 내용 및 방법**

- 지원기간 전체의 사업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에 의한 평가

**다. 평가 결과 조치** : 인문한국지원사업 지속 시 계속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  
※ 필요시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 여부 및 내용 결정

# 해외지역연구 분야

☞ 본 세부계획에 명시된 내용 외의 사항은 인문연구 분야 지원계획을 준용함

## I. 사업목적 및 지원 방향

### 1. 사업목적

- 연구소 내에 해외지역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인문적 기초에 기반한 지역 연구의 인프라 구축과 국제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구축함
- 연구소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수준높은 연구를 통해 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 성과의 학문적·사회적 확산을 지향하여 세계적 담론 생산과 소통을 주도하고, 지식 기반 고부가가치를 창출함
-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해외 각 지역에 대한 심층적, 학제적 기초연구를 토대로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구현된 지식정보의 생산
- 각 지역별 전문자료 축적과 공유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국가 전략적·정책적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지원 실현
- 지역연구 활성화의 단계를 넘어 지역연구의 올바른 정체성 및 위상 확립을 기반으로 연구성과의 활용도 및 질적 수준 제고

### 2. 지원방향

- 지역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개별 단위 지원이 아닌 연구소 단위로 지원하고, 대학연구소 소속 전임연구교원의 단계적 확보 유도
- 해외 지역연구의 획기적 발전 토대 구축을 위해 고급 지식정보의 축적과 공유 및 지역 전문가 양성 유도
-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연구의 자율성과 인사와 사업비 운영 등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 성과 및 연구소 운영 현황을 공시하여 연구소의 책임성 강화
- 선순환적 지식 재생산 구조 구축을 통한 연구성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구 성과물의 DB 구축 및 서비스 운영

## II. 지원영역 및 분야

### 1. 연구 지역

- 세계 각 지역 및 권역
  - 대상 지역 설정은 자율로 하되, 신청 연구소에서 그 중요성을 제시하고 심사과정에서 검토함
  - 예시 : 북미, 중남미, 동북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CIS 등 권역 및 주요국가

### 2. 연구 분야

- 인문학적 기반의 해외지역 연구
- 연구영역 구성 : 아래 필수영역 중 2개 이상 영역 반드시 포함
  - 필수영역 : 언어, 문학 / 역사 / 종교, 사회, 문화(민속학, 인류학 포함)
  - 필수영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법, 제도, 정치, 경제 등까지 연구할 수 있음
    - \* 예시 : 언어+종교+제도, 역사+인류학+정치학, 언어+역사+법+정치+경제 등
- ※ 새로운 관점 및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를 의미하며, 기존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진 주제, 국책연구소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 정책보고서류의 주제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분과학문의 틀에서 수행하는 사례연구(case study) 혹은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연구에 대한 지원을 지양

## III. 지원대상

### 1. 단위 : 해외지역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부설 연구소(학칙)

- ※ 해외지역 연구는 연구단 신청이 불가함
- ※ 기타 사항은 인문연구분야 내용 준용

### 2. 참여인력 :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

- ※ 기타 사항은 인문연구분야 내용 준용

## IV. 연구소 사업계획

### 1. 기본 활동

- 인문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및 연구소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 연구 기획 및 수행
- 해외 주요 연구소와의 네트워크 구축

### 2. 해외지역 지식정보 생산 및 공유

- 해당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 축적 및 연구
- 축적된 자료의 공유 및 확산

### 3. 인력 양성

- 지역전문가 양성
  -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연구인력에 대한 체계적 연구지원을 통해 역량있는 지역전문가 양성 유도

## V. 심사 및 선정

### 1. 심사절차

단계별	심사구분	심사내용
1단계	예비심사	- 해당지역 연구계획 - 연구실적 및 연구소 운영실적 - 연구소 운영계획 * 면담 포함(발표 질의 및 응답)
2단계	전공심사	- 세부 연구계획 (인력포함) - 지역전문가 양성 계획 - 연구소 운영계획 * 면담 포함(발표 질의 및 응답)
3단계	종합심사	- 1·2단계 심사결과 검토 - 예산배정 및 선정

※ 각 단계별 요건심사(신청요강에 의한 행정요건 저축여부 검토 등) 실시

※ 1단계 심사 통과 연구소에 한하여 2단계 심사 실시함

※ 2단계에는 1단계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한 수정 계획서를 심사 함

※ 각 단계별 심사시 항목별로 실현가능성을 중점 검토할 예정

## 2. 심사방법 및 내용

### 가. 예비심사

- 심사내용 및 방향
  - 연구대상지역 설정의 타당성, 연구성과 관리 등에 관한 기본 계획
  - 대상지역접근계획, 연구실적 및 연구소 운영 실적
  - 지역연구로서의 총체성 및 전문성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1. 대상지역 접근계획	- 대상지역연구의 필요성 - 지역연구목적의 타당성 (필수및 선택분야의 적절성) - 학제적 성격	40
2. 연구수행가능성	- 연구소 운영 및 연구실적을 통해서 본 수행가능성 - 과제 운영의 객관적 능력 (공간 및 제도) - 연구소장의 능력	60
합계		100

※ 면담심사 실시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심사, 일정 추후 통보)

※ 신생연구소의 경우 공간 확보 및 제도 수립 계획을 중심으로 검토하  
되, 전신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심사시 반영 예정

※ 1차 심사통과 연구소에 한하여 심사결과를 반영한 세부계획 수정 제출  
가능 (심사의 컨설팅 기능 도입)

### 나. 전공심사

- 심사내용 : 세부 연구계획, 연구소 운영계획

○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심 사 항 목	심 사 내 용	배 점
1. 지역연구 수행	내용	- 연구내용의 창의성/타당성 - 세부내용 및 세부내용간의 연계성 - 연구내용·방법의 적합성/논리성/구체성 -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25
	수행능력	- 참여인력의 역량 - 인적 구성의 적정성	15
2. 연구소 육성 및 운영	운영실적 및계획	- 기존 실적 - 지역전문가 양성 계획 - 연구원 및 연구교수 활용 계획 (정년보장 전환 계획 포함) - 연구보조원 교육 및 활용계획	20
	운영기반	- 연구소 시설, 공간 및 연구장비 지원 - 전문학술지, 해당지역정보지 등 발간 여부 - 연구소 내 조직 및 의사결정 시스템 - 연구원 업적 평가 시스템	20
	기관의 육성의지	- 인력 임용 관련 의지 (규정, 제안 등) - 연구소 시설, 공간 및 연구장비 지원	20
합 계			100

※ 면담심사 실시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심사, 일정 추후 통보)

※ 신생연구소인 경우, 공간 확보 및 제도 수립 계획을 중심으로 검토

다. 제3단계 심사 (종합심사)

- 심사내용
  - 전 단계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검토
  - 예산배정 및 선정
- 유망연구소 대상 선정



## 기타 행정 사항

- 심사요청 학문분야는 재단의 “연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선택하여야 함
- 신청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일정 기간 해당 과제에 심사결과와 관련된 심사의견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심사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거,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아연구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은 배아 연구기관으로의 등록과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얻어야 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 연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문 의 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http://www.krf.or.kr>)

- 사업관련 문의

: 인문학지원팀

Tel (02) 3460-5576, 5573, 5552, Fax (02) 3460-5589

- 전산관련 문의(회원가입, 학술연구자정보 등록, 대학부설연구소등록 등)

: 학술정보팀

Tel (02) 3460-5545~8

Fax (02) 3460-5549

**【붙임】 2007년 인문한국지원사업 사업비 산정·집행 기준표**

항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인건비	- 연구보조원 :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 개인별 총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2항에 정한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학사과정생 : 월 40만원 이내 / 1인당 -석사과정생 : 월 80만원 이내 / 1인당 -박사과정생 : 월 120만원 이내 / 1인당
	- HK 연구인력 * 교육인적자원부, 재단 및 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 4대보험료 (기관지원분)를 산정할 수 있음	-HK연구교수 -HK연구원 ※ 지원액 기준은 본문 참조 ※ 4대보험 : 상기연구인력 수당의 9%로 산정, 산액발생시 인건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용에 한해 인정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비 및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정확한 산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시제품제작비 시제품, 시작품, 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여비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현지 교통비 등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국외 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왕복 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지급을 원칙으로 함) ※소속 기관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함
	• 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 수행에 직접 관련된 인세, 복사, 슬라이드 제작, 현상,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사무용품 등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 기술정보활동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료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평가회의비 및 각종 자료 구입비 등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 소요액 지원 ※ 문헌구입비는 “기술정보활동비” 항목에서 신청함
	• 조사연구비 현지 조사 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는 여비 비목에서 집행)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 연구활동비 연구소장/단장, 일반연구원의 연구 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 인건비를 계상한 HK연구인력은 연구 활동비를 계상할 수 없음	-연구소장/단장, 일반연구원 : 연 300만원이내
	• 연구홍보비 (특허출원비의 경우 간접비에서 집행)	-논문게재료 등 연구 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 ※ 위 표를 참조하여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 산정 (단, 연구보조원 수당 및 연구활동비는 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 HK연구교수/HK연구원은 본 사업에서 연구활동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없으며, 다만 본 사업 이외의 재단 여타 사업의 과제에 참여시에는 본 사업에서 선택하지 아니한 연구활동비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음.
- ※ BK21 또는 NURI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보조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신분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학술연구조성사업의 연구보조원 참여 및 수당 수혜가 가능함(단, 학술연구조성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하여야 함)